

베풀고 나눔은 인정이요 기분 좋은 날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을 오늘도 훈훈한
날을 맞이한다. 즐거운 마음의 지혜는 생
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고장에는 100년 이래 처음내린 폭
설이 쏟아졌다(80~130cm). 2018년 평
창동계올림픽대회 IOC평가 단원이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한 반가운 손님 맞이한 듯
때마침 눈이 내려 자연경관도 좋은 인상을
주어 유치에 도움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강원영동지
역 山間僻地(산간벽지) 길 열어 주는 이들
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빵으로 점심을 때
우며 국도 지방도 골목길 누비는 날 4일이
니, 제설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노고에
감사하고 기뻐, 하루 종일 마음 흐뭇하며
든든하다. 우리 이웃에는 우리가 있기 때
문이다. 폭설 속에 웃음의 꽃이 피어난다,
부상당한 지역주민이 하루속히 쾌유되고,
재산손해 본 것이 복구돼 일상생활로 돌아
와서 우리와 함께 즐겁게 지냈으면 한다.

特別災難地域(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되어 응달 견혀 양달로 가는 것이다. 易地
蓋然(역지개연)의 지혜는 우리의 날이다.
陰地의 지혜 원치 아니하는 우리 마음을
止揚(지양)하고, 陽地의 지혜가 潑劑(발랄=
활발하게 약동하는 모습)하게 들어난다. 자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 논설위원



건강한 삶을 위한 식이요법

고 일어나니 세계 두 날의 지혜가 번득인
다. 눈을 들어 넓게 높게 낮게 좁게 속을
보기로 한다. 아침잠을 깨어 이웃도 깨어
준 중동사람들의 지혜, 그제는 이집트 무
바라크 어제는 예멘, 오늘은 알제리, 내일
은 바레인, 모레는 리비아의 카다피. 다음
은 내 차례이다. 사필귀정일이라!

DOMINO 현상일까, 權者(국민의) 權力
(국민에 의한) 權勢(국민을 위한) 또 財力을
국민에게로, 權者는 破滅(파멸)의 지혜로
물러나는 일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陰地
陽地之變(음지양지지변)이란 음지가 양지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격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일이 돌고 돌아 불운과
행운이 순환한다는 의미이다. 생각을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이 지혜이고 입장이
되어보는 지혜 즉 입장을 바꿔보는 지혜
올곧은 양보 이해 입장이 아니던가? 자기
말, 남의 말, 하기 쉬우나, 좋은 말은 행동
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말은 '인류가 안
고 있는 영원한 풀어야할 과제이다.' 라고
생각된다.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강건함은 물론이지만 食餌療法(식이요법)
으로 疾病豫防(질병예방)의 과제를 풀기위
하여 민들레의 시사점인 인내성 강성(굳셈)
예의 변별력 근면성 사랑 식을 번식 인자
함을 소개했던 것에 이어 아재로서 우리에
게 선현적인 일반적 상식을 再論(재론)해도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몇 가지 豫防治病效

能(예방치병효능)을 알아보기로 한다.
蒲公英(포공영) 捕公草(포 공초,창포)라
칭하는데 이 기운과 맛은 쓰고 달며 차다,
清熱解毒(정열해독 열을 내리고 독을 풀
어준다.) 消腫排膿(소종 배농; 부기종기
고름을 배출케 하는 작용을 말한다.)

성분은 실리마린이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가 있다. 어린잎은 나물로 사용하고
祛痰(거담)發汗(발한) 기침을 멈추게 한다
고, 乳房浮氣(유방부기)健胃(건위)剛腸(강
장)精血(정혈)催乳(최유) 消化促進(소화촉
진)에 開花(개화) 전 전부를 채취 씻어 건조
하여 달여 복용한다. 예: 菖蒲(창포)香蒲
효능 神經痛(신경통) 류머티즘 神經緊張緩
和(신경긴장완화) 血液循環(혈액순환) 不眠
症(불면증)기타증세를 다스린다.

湯藥材料(탕약재료)로 뿌리줄기사용 實
事는 꽃피기 전 채취 건위 위통 소화촉진
엔 건조된 뿌리5~10g을 1일양 물200g
를 달여 3회 나눠 복용한다. 유방부기엔
뿌리와 인동덩굴을 건조시킨 꽃 각 5g를
물200g을 1일양으로 하여 3회 복용한다.

인간에게 자연이 주는 좋은 食藥菜蔬(식
약채소)이다. 이러한 식약 채소를 채취할
때에 熟考(숙고)한다. 즉 藥草保全(약초보
전)의 지혜를 發揮(발휘)하여야 한다.

경희는 내 동생이다. 지적 장애자다.

거진을 송정초등학교 5학년때 서울로
유학시켰다. 장충여중 전교 1등, 해원여
고 장학생. 나는 우쭐거리며 내 동생을
우리집의 보배라고 자랑했다.

원하는 대학실패, 결국 그녀는 대학
중퇴의 영예(?)를 안고 현실과 이상속에서
헤매다가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그래서
오랫동안 정신병동인 저 세상 밖에서
지냈다.

나는 38년간의 서울생활을 접고 귀향
하였다. 동생의 인생을 설계해 주고 싶어
서였다. 짝을 만나게 해 주려고 애썼다.

작년 가을엔 춘천에서 진행하는 장애
자 말선보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어려웠
다.

집안에 갇혀있는 그녀를 위해 교육적
인 시스템을 찾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보내야 할 시설이 한군데도 제대로 갖추

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복지,
복지하고 외치는데 왠지 공허하다.

현재 고성군의 예산은 다양하게 쓰여
지고 있다. 예산이 적다고들 저마다 애로
를 털어 놓는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진
정 그 한정된 예산을 어떤 곳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 고민해 보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단체를 만드는가,



남숙희 칼럼
시인

사랑한다, 경희야

정말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다.

다행이도 올해 군예산에 장애인 복지
회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왜 복
지회관이 필요한가?

첫째로, 장애인은 문화적 소외 계층이
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그들이 와서 노래
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

림도 그리고, 뜨개질도 하고, 요리도 배
우고, 그래서 그들이 용기 있게 홀로서기
연습을 하고 하루하루 즐거워할 때 고성
군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도 장애인 보호자만이
보호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위상이란 복지의 역할을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복지국가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내 동생과 함께
살아있음을 감사한다.

내 동생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내 동
생을 통하여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사유
한다.

하루빨리 고성군이 힘을 모아 이천삼
백여명의 장애인들을 보살필때 고성은
살기 좋은 천국이 될 것이다.

사랑한다. 경희야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처가 빌린 돈에 대하여 갚아줄 의무

문) 이웃에 사는 갑은 제가 5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여금청
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남편의 사업자
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
성해주었고, 빌린 돈은 도박으로 탕진하였
습니다. 저는 처가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
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법원으로
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 받기 전까지
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저는 처가 빌
린 돈에 대하여 갑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
는지요?

답) 민법상 부부간은 일상의 가사에 관
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

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
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
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
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
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
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
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
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

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금전차용행위
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
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
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의 처가 귀하의 사업자금 명
목으로 빌린 금 5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
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박이 있는 귀하의 처에게 인감
도장을 관리하도록 한 관례나 그 차용액수

등에 비추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126
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
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관하
여 판례는 “권리를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고, 그 이후의 사
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
다.” 라고 하였습니다.

